

<붙임2> 우수기숙사 요건 및 확인 방법

□ 우수 기숙사 인정 기준: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시설일 것

- ① 숙소유형이 단독주택, 연립·다세대 주택,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일 것
(컨테이너를 개조한 시설이나,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등 임시주거 시설은 제외)
- ② 사업주 소유이거나 잔여 임대기간이 20개월 이상일 것
(임대기간이 20개월 미만이라도 지금까지의 임대기간 등으로 보아 향후 2년 이상의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)
- ③ 소화전,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
- ④ 1실당 평균 거주인원이 4명 이하일 것
- ⑤ 같은 침실을 다른 국적 노동자나, 다른 근무조와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
- ⑥ 침실과 거실 등이 남녀간 구분되어 있을 것
- ⑦ 현대식 부엌, 화장실, 목욕시설, 수도시설 및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고, 화장실과 목욕시설은 남녀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
- ⑧ 주거시설 설치 및 유지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을 것
- ⑨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55조부터 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주거 기준을 준수하고 있을 것
(소음 진동이 있는 장소가 아닐 것, 침실 넓이가 1인당 2.5㎡ 이상일 것 등)
- ⑩ 기타 전반적인 숙소 환경이 양호할 것

□ 우수 기숙사 여부 확인 방법

- 지방관서의 부족한 인력상황을 고려하여, 매년 상·하반기에 실시 중인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·점검 시 기숙사 점검을 병행 실시
 - 지도·점검결과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고, 우수기숙사 설치·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
- 우수기숙사 여부가 기재된 실태 점검표에 점검자와 사업장 대표가 서명하고,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사실 및 인정 기간(임대차계약서 등 감안하여 최대 2년)을 점검자가 EPS시스템에 입력